



영국의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방재대책 관련법

정보신청기관 : 문화재청 정책과

I. 서설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들에 대한 보존과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영국은 수차례의 대화재와 세계대전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역사적 건축물 중 일부가 훼손되는 경험을 하였고, 역사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보존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영국의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보존의 근거가 되는 법규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래에서는 영국의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규들의 내용을 「National Heritage Act」와 기타 법률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National Heritage Acts

영국의 문화재 보호는 「National Heritage Ac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본 법은 1980년 제정된 규범과 이후 1983년, 1995년(스코틀랜드에만 적용되는 법규), 1997년, 2002년 차례로 제정된 내용들이 함께 적용된다. 각 규범들은 제정 이후 상황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 및 보장되었다.

1. National Heritage Act 1980

1980년 제정된 「National Heritage Act」의 골격이 되는 내용은 문화재보호기금인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의 조성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재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에 관련된 규정, 문화재의 손상에 대한 복구작업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에 대한 규정, 기타 사항 등이다.



2. National Heritage Act 1983

1983년에 제정된 National Heritage Act는 영국의 유명 역사건축물들에 대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English Heritage라는 비정부기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법의 골격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내용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본 법의 대상이 되는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The Science Museum, The Royal Botanic Gardens-Kew 등의 건축물 및 공간들은 그 건물과 토지 자체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해 각 건축물마다 별도로 적용되는 법규범을 본 법에서 마련한 것이다. 본 법에서 각 건축물마다 위원회를 따로 두면서 활용과 보존의 두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와 같은 건축물 자체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와 함께 여전히 현재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물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건축물들은 보존의 대상인 동시에 문화행사와 박물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법에 따르면, 각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건물과 부속물의 이용·처분, 기타 관련 행위들이 규제된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과 관련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보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과는 별도로, 본 법은 특히 His-

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일명 English Heritage)라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위원회의 임무·권한·지원 등을 본 법이 명문화 하였다. English Heritage의 기능은 잉글랜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기타 관련 사항들을 처리한다(법 제33조 제1항). 본 법에 따라 위원회는 매우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해당 건축물의 교육 및 홍보시설을 설치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 및 기록·연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위원회는 해당 건축물들의 보호를 위한 다른 규범들(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 Planning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위원회는 The Least Reform,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 1993 등에 의해 규칙을 제정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2항). 본 법을 통하여 기존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The Historic Building Council for England와 The Ancient Monuments Board for England의 기관은 English Heritage에 흡수되었다(법 제39조). 본 법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Victoria and Albert Museum

1. Establishment of Board of Trustees.
2. The Board's general functions.
3. Power of Board to form companies.

4. Initial vesting in Board.
5. Certain gifts vesting on or after vesting day.
6. Acquisition and disposal of objects.
7. Lending and borrowing of objects.
8. Finance.

Science Museum

9. Establishment of Board of Trustees.
10. The Board's general functions.
11. Power of Board to form companies.
12. Initial vesting in Board.
13. Certain gifts vesting on or after vesting day.
14. Acquisition and disposal of objects.
15. Lending and borrowing of objects.
16. Any expenditure incurred by the Board shall, except so far as defrayed out of other sources, b

Armouries

17. Establishment of Board of Trustees.
18. The Board's general functions.
- 18A. Power of Board to form companies.
19. Initial vesting in Board.
20. Acquisition and disposal of objects.
21. Lending and borrowing of objects.
22. Finance.

Royal Botanic Gardens, Kew

23. Establishment of Board of Trustees.
24. The Board's general functions.
25. Power of Board to form companies.
26. Initial vesting in Board.
27. Acquisition and disposal of objects.

28. Lending and borrowing of objects.
29. Finance.

Armed Forces museums

30. Grants by Secretary of State.
31. Designated institutions.
The Royal Naval College
- 31A. Grants for preservation of Royal Naval College site.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

32. Establishment of Commission.
33. The Commission's general functions.
- 33A. Functions relating to foreign monuments and buildings
- 33B. Powers to exploit intangible assets
- 33C. Assistance in relation to protected wrecks
34. Commission to exercise certain ministerial functions.
35. Power of Commission to form companies.
36. Records : powers of entry.
37. Monuments etc. partly situated in England.
38. Finance.

General

39. Dissolution of certain bodies.
40. Amendments and repeals.
41. Commencement.
42. Extent.
43. Short title.



3. National Heritage Act 1997

1997년 제정된 법은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의 운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본문 4개조의 짧은 법률이다.

4. National Heritage Act 2002

2002년 제정된 법은 English Heritage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즉, 1983년 법이 육상에 위치한 건축물 및 유적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2002년 법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해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것들(예를 들어, 난파선·추락 항공기, 기타 구조물 등)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기타 다른 기관들과의 업무관계에 관해서도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하였다(법 제7조).

5. English Heritage

English Heritage는 영국정부의 주무부처인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의 지원을 받아 협조하는 위원회로서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 Public Body)이며, 공식명칭은 근거규범인 「National Heritage Act 1983」에 따라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이다. English Heritage의 역할은 잉글랜드 지역의 역사적 환경을 유지하고 정부에 필요한 조사결과를 알리고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Royal Commission on the Historical Monuments of Eng-

land(왕립잉글랜드 역사건축물위원회)의 역할도 1999년부터 이곳으로 흡수되었다.

English Heritage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잉글랜드 지역에 존재하는 많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 등에 대한 보존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건축물 등의 등록작업을 하고, 권고를 하며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까지 한다. 특히 English Heritage의 업무 중에는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기록, 사진 등을 등록 보관하는 National Monuments Record가 있다. English Heritage에는 잉글랜드 지역에 존재하는 많은 역사적 건축물, 성당, 교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English Heritage Properties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English Heritage는 잉글랜드 지역만을 담당하며, 영국내 다른 지역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스코틀랜드-Historic Scotland, 웨일즈-Cadw, 북아일랜드-Environment and Heritage Service).

6.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는 「National Heritage Act 1980」을 근거로 조성된 영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기금이다. 이 기금은 영국의 모든 문화재(건축물, 예술작품 등을 포함)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의 자금 대부분은 보존위기에 처한 문화재에 긴급지원 되는데, 영국 정부는 최근 기금액수를 5백만 파운드

에서 천만 파운드 선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11년까지 매년 이러한 액수의 기금출연을 확정하였다.

III. 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 개 관

「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건축물들과 인접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에 관련된 특별한 취급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영국에서 적용되는 법은 1990년대 제정된 것이며, 2008년까지 본 법과 관련된 하위규범과 명령이 수차례 마련된 바 있다.

본 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본 법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역사적 건축물들의 등록과 규제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건축물들에 인접하거나 부속된 토지의 지정 및 규제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본법의 규율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네 번째 부분은 기타 규정들에 관한 것이다.

2. 등록된 건축물

본 법 제1편(Chapter 1-Chapter 6, 제1조-제68조)은 특별한 건축학적 또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축물의 정의와 등록(Chapter 1), 해당 관청의 업무와 이용에 관한 사항(Chapter 2), 소

유주의 권한과 의무(Chapter 3), 강행규정(Chapter 4), 해당건축물에 대한 피해와 예방(Chapter 5), 기타 사항(Chapter 6)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장(Prevention of Deterioration and Damage)에서는 등록된 건축물의 보존과 방재 대책을 규율한다. 즉, 보수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련된 보상의 내용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제54조-제56조)과 기타 유지 보수 관련 내용(제57조-제58조)을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제59조는 등록된 건축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다. 이러한 부분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Compulsory acquisition of listed building in need of repair

47. Compulsory acquisition of listed building in need of repair.
48. Repairs notice as preliminary to acquisition under s. 47.
49. Compensation on compulsory acquisition of listed building.
50. Minimum compensation in case of listed building deliberately left derelict.
51. Ending of rights over land compulsorily acquired.

Acquisition by agreement

52. Acquisition of land by agreement.



Management of acquired buildings

53. Management of listed buildings acquired under this Act.

Urgent preservation

54. Urgent works to preserve unoccupied listed buildings.

55. Recovery of expenses of works under s. 54.

56. Dangerous structure orders in respect of listed buildings.

Grants for repair and maintenance

57. Power of local authority to contribute to preservation of listed buildings etc.

58. Recovery of grants under s. 57.

Damage to listed buildings

59. Acts causing or likely to result in damage to listed buildings.

3. 보존지역

본 법 제2편(제69조-제80조)은 위와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지역(Conservation area)을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존지역에서는 해당관청의 허가 없이는 일반적인 철거행위가 금지되어있다(제74조).

이러한 규정은, 다른 규범들 특히 지역개발에 관련된 다른 규범들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이 지역이 본 법상의 보존지역에 해당하거나 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허락이 없는 경

우에는 철거행위조차 금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Town and Country Amenities Act」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IV.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역사적인 건축물과 유적들에 적용되어 그 파괴를 막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3년에 제정된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는 이후 제정된 관련 규범들로 일부내용이 삭제되었다.

본 법이 현재까지 적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규범들이 잉글랜드 지역에 주로 적용되는 반면에 이와 유사한 사항들을 그 외의 지역(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법은 관련 규범들이 새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일부규정들의 삭제와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적용되는 본 법의 주요 내용은 잉글랜드를 제외한 각 지역의 관련 기관, 기관의 권한과 임무, 역사적 건축물들의 지정과 예외 등이다.

V.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는 특별히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는 유적 및 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1979년

제정되었다. 본 법은 이전 관련 규범들의 내용을 통폐합하면서, 고고학적 가치의 토지 및 문화재를 연구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제정된 규범들로 인하여 많은 규정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English Heritage와 같은 위원회의 설치와 권한행사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본 법 크게 유적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Part 1(Ancient Monuments)과 고고학 연구지역에 관한 Part 2(Archaeological Areas), 기타 규정에 관한 Part 3(Miscellaneous supplement)로 구성되어있다.

VI. 결 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재 및 건축물·유적에 관하여 각각의 법규를 제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이용에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소유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들을 설치하여 법규에 따라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특별한 절차와 조건이 부가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영국의 다른 법규들 특히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또는 「Town and Country Amenities Act」와 같은 도시개발 등과 관련된 규범들이 관련자들에게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문화재 보존 관련 규범의 특징은 무엇보다 이러한 건축물 등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지원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밖에 건축물 등에 훼손을 가하는 자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담당기관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도 특별하다.

김 봉 철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